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윤목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 2016년 11월 2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주민과 지역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의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으로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안제1조~안제3조)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안제7조, 안제8조)

○ 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안제9조, 안제10조)

○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안제25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1조 ~ 제6조, 조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7조 ~ 제15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제16조 ~ 제24조,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 제25조 ~ 제30조,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중 마을 공동체 지원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임.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제정과는 별개로 이미 충청북도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마을 만들기”의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붙 임: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끝.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현황(광역자치단체)

	단체	조 례 명	제정일자
1	경기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8. 1
2	강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4. 1. 3
3	서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 3.15
4	부산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 7.11
5	대구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11.11
6	인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3. 5.27
7	광주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010. 3. 1
8	충남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2012.12.31
9	전북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09.12.28
10	전남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12.31
1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2009. 1. 7
1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3. 7.30